1과목: 산업재산권법

- 1.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
 - 고, 2006년 10월 6일 특허출원된 발명이 2008년 1월 3일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경우,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10월 6일 24시까지이다.
 - 나,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(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)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하며야 한다.
 - c.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특 허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 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 - 리,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며 특허법 제180조(재심청구의 기 간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보완 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미. 심사청구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12일(토요일)인 경우 출원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
 - ① ¬, ⊏, ≥
- ② ¬, ⊏, □
- ③ ∟, ⊏, □
- ④ ∟. ⊏
- ⑤ ∟, □
- 2.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?
 - ㄱ, 특허권미 취소된 경우
 - ㄴ, 특허권미 수용된 경우
 - ㄷ,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
 - a,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
 - 트러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
 - ① ¬, ∟
- ② ㄴ, ㄹ
- ③ ∟, □
- ④ □. =
- ⑤ ≥, □
- 3. 甲은 "a+b+c"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.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'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"a+b+c'+d"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.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 (단,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, c와 c'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)

- 고의 발명은 甲의 발명을 개조하였다 하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미용하였으므로양 발명은 미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.
- 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의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乙은 통상실시권허며의 심판을 청 구하며 심결의 주문에서 정하며지는 범위 내 에서 업으로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.
- C. 그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a. 乙은 甲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거나 특허권을 양수하며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.
-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비용은 심판의 결과에
 따라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부담한다.
- ① ㄱ, ㄴ, ㄹ
- ② ¬, ∟, □
- ③ ¬, =, □
- ④ ∟, ⊏, ≥
- ⑤ ⊏. =. □
- 4.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- ①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
 - ②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
 -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
 - ④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 - ⑤ 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
- 5.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.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,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- ②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,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,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.
 - ③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,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
 - ④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,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⑤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,

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'간주된 자유발명'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- 6.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 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 - ②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 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 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 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.
 - ④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 하며,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 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 다.
 - 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.
- 7.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.
 -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 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.
 - ③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.
 - ④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 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 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.
 - ⑤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 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8.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만 묶인 것은?

- NTO/TRIPs 협정은 회원국들로 하며금 병행
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WTO/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미나 집 행에 관한 분쟁해결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.
- c. WTO/TRIPs 협정에 의하면 식물변종(plant varieties)을 특허와는 독립된 입법에 의하며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.
- 트, 특허협력조약(PCT)에 의하면 세계 모든 국가 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 득할 수 있다.
- 국내입법이 WTO/TRIPs 협정보다 특허요건을
 더 엄격하게 규정하더라도 WTO/TRIPs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.
- ① ¬, ∟, ⊏
- ② ∟, ⊏, ≥
- ③ ∟, ⊏, □
- ④ ∟, ≥, □
- ⑤ ⊏, ≥, □
- 9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미생물이 시중에 서 판매되어 공지·공용된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.
 - ② '화합물 A'에 관한 발명과 '화합물 A의 제조방법'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甲은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다. 그 후 2006년 10월 20일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고, 분할된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라는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乙이 2006년 9월 20일 a를 특허출원한 경우, 乙은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수 없다.
 - ④ 甲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+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+B와 A+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, 甲은 A+B와 A+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다.
 - ⑤ 하나의 출원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는 발명 A와 B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특허등록이 허여된 경우, 이해관계인 은 이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10.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? [단,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)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]

- 고, A회사의 연구원인 甲은 2007년 6월 8일 신약에 관한 발명을 하고 2007년 6월 10일 그 발명의 내용을 A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07년 8월 10일에는 서울에서개최된 학회에서 발표하였고, 2008년 2월 5일 특허출원하였다.
- L. 甲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발명하였고, 이 발명을 비밀리에 알아낸 직장 동료인 乙이 이를 2007년 8월 20일 공개하였 다.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은 甲과 동일 한 발명을 하며 2007년 10월 19일 특허출원 하였고 甲은 2008년 1월 21일 특허출원하였 으며, 丙의 출원은 2008년 2월 14일 조기 공 개되었다.
- 다. 甲은 건물 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페인트를 발명하고 이를 2007년 6월 1일부터 자신의 전용 실험실에서 사용하여 그 성공을 확인한 후 2008년 2월 25일 특허출원하였다.
- a. 과학자인 甲은 2007년 5월 10일 화학약품에 관한 자신의 발명을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 서 발표하고 이를 2007년 11월 8일 한국에서 특허출원하였다.
- 마. 甲은 수력(水力)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방법에 대한 발명을 하였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15명으로 구성된 甲 회사 연구위원회 위원만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2007년 3월 25일그 내용을 게재하였다. 甲은 2008년 1월 28일 자신의 발명에 대하며 특허출원을 하였다.

① ¬, ∟

② ¬, □

③ ∟, ⊏

④ ⊏, ≥

⑤ ≥, □

11.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

-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고의나
 과실이 없더라도 침해금지 청구 또는 침해금
 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.
- 시환가능성 또는 치환용이성 등의 용머를 사용 하면서 균등론을 사실상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 라 판례의 태도이다.
- 다.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권자가 제3자에 대하 여 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미익을 얻은 때에 그 미익액을 손해액으로 청 구할 수 있다.
- 트, 특허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 할 수 있다.
- 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 벌을 구하는 고소가 없어도 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.

① ¬, ∟

② ¬, ⊏

③ ∟, ≥

④ ∟. □

⑤ =. □

- 12.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,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 인할 수도 있다.
 - ②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,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.
 - ③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,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.
 - ④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,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.
 - ⑤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.
- 13.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?

- 고.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며 같은 날에 2 미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 고를 한 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정한 자 외의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나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권리자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 한 특허법 제126조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권 등)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.
- 트 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이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트, 특허출원 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인은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.
-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해야 한다.
- ① ¬, ∟
- ② ∟. ≥
- ③ ∟, □
- ④ □. =
- ⑤ □. □
- 14.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은?

- 특허협력조약(PCT)에 의하며 국제출원일이 인 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며 대한 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 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.
- 나, 국제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며 특허법 제30조 (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)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1조(국제특허출원의 번 역문) 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다.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. 이에 따라 국제특허출원 의 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4월 이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리, 국제특허출원에서 특허법 제82조(수수료)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, 동법 제 201조(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)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, 기준일을 경 과한 후가 아니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.
- 미,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하여
 며 특허법 제133조(특허의 무효심판) 제1항
 각호의 무효사유를 가지는 경우에만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비,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이 경과한 때 그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 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내 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 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 제공개가 된 것은 무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 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때에 출원공개를 한다.
- ① ¬, ∟, ≥
- ② ¬, ∟, ㅂ
- ③ ¬. ⊏. ㅂ
- ④ ∟. ≥. □
- ⑤ ⊏, ≥, ㅂ
- 15.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, 국내 우선권주 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
 - ②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,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.
 - ③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 출원·실용신안등록출원·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 다.
 - ④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,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

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.

- 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.
- 16.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 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.
 - ② 사람을 수술·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.
 - ③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.
 - ④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.
 - ⑤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 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 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 함한다.
- 17.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 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 다.
 -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특허법 제107조(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)에 의한 통상실 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 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.
 -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 - 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 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.
- 18.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?
 - ①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,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·합리적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.
 - ②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.
 - ③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 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.
 - ④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,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 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
 - ⑤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 립항은 그대로 두고,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 다.

- 19.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?
 - ①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
 - ②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 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.
 - ④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 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.
 - ⑤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 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.
- 20.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한다.
 - ②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 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.
 - ③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 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 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 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.
 - ④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 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.
 - 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 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 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,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.
- 21.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②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, 명함,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.
 - ③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다.
 - ④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·판매 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 은 허용되지 않는다.
 - 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.
- 22.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

그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②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 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③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(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 권자의 부정사용)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 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 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.
- 23.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.
 - ② 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,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 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.
 - ③ 수출업자가 작성·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 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 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 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.
 - ④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.
 - ⑤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 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,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 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24.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(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1,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처리 됩니다.)
 - ①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.
 -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.
 - ④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 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⑤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 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25.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'A'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'A'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. 그런데,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'A'상표와 유사한 'A⁺'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

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. 한편,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'A⁺'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'A'상표와 극히 유사한 'A^O'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 자로 하여금 甲의 'A'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. 이 경우 甲이 乙의 'A⁺'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?

- 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(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) 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
-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(주지상표)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
- ③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(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)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
- ④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(사용권자의 부정사용)에 기 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
- ⑤ 乙의 등록상표 'A''가 甲의 등록상표 'A'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
- 26.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 난 사항에 한하여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.
 - ②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위 보 정가능기간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이다.
 - ③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답 변서 제출기간 내이다.
 - ④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 보정가능 기간은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내이다.
 - ⑤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 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 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.
- 27.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 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.
 - ②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 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.
 -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 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.
 - ⑤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 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 여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28. 상표법 제7조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, 국장, 훈장, 포장 및 기장은 특 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 조의3(3)(a)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 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.
 - ②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 금 출처의 오인,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 용될 수 있다.
 - ③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

-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'부정한 목적'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- ④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'수요자간에 현저하 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'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 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.
- 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, 형상, 용도와 생산부문, 판매부문,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- 29.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 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(상표등록출원)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.
 -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 을 보정할 수 있다.
 -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 -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 다.
- 30.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, 불확정적 개념이다.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, 외관에 중점을 두어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되고 칭호를 중시하면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된다.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,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.
 - ② 상표보호의 목적은 상표모용(冒用)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상품출처혼동 행위의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결정한다.
 - ③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 소 정의 '상표등록출원시'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 원시를 기준으로 한다.
 - ④ 어떤 상표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)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,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 사유 와 동일하다.
 - ⑤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심사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료, 품질, 형 상, 속성 등 상품의 성질,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.
- 31.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 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.
 - ②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 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

- 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 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.
- ③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 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.
- ④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 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 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 할할 수 있다.
- 32.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.
 - ②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③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 자인보호법 제5조(디자인등록의 요건) 제1항 및 제16조 (선출원)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.
 - ④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 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말한다.
- 33.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 가?
 - ㄱ. 판화를 인쇄한 달력
 - ㄴ.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형태
 - ㄷ. 도로의 입체교차로
 - ㄹ.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
 - ㅁ.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
 - ㅂ. 형상미 연속하는 철사
 - ㅅ. 아이스캔디
 - ① 2개
- ② 3개
- ③ 4개
- ④ 5개
- ⑤ 6개
- 34.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.
 - ②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 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.
 - ③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 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 되는 경우가 있다.

- ④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 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 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
- ⑤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35.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 조(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)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 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.
 - ②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 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 우가 없다.
 - ③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 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.
 - ④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 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 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.
 - 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36.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)
 -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 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
 -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 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 - 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 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 다.
- 37.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,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 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 - ②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 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 - ③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 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 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다.
 - ④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

- 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⑤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.
- 38.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 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 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 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.
 -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.
 - 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 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.
- 39.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.
 - ②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.
 -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,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.
 - ④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 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는 소멸한다.
 - 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, 각 공유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 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.
- 40.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 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.
 -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 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.
 -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, 디자인등록출원 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 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.
 -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, 디자 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

되는 경우가 있다.

전자문제집 CBT PC 버전 : <u>www.comcbt.com</u> 전자문제집 CBT 모바일 버전 : <u>m.comcbt.com</u> 기출문제 및 해설집 다운로드 : <u>www.comcbt.com/xe</u>

전자문제집 CBT란?

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, 오답 노트,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.

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/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.

오답 및 오탈자가 수정된 최신 자료와 해설은 전자문제집 CBT 에서 확인하세요.

1	2	3	4	5	6	7	8	9	10
4	3	1	1	4	3	4	2	4	1
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3	(5)	(5)	2	3	5	1	(5)	4	4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2	(5)	3	1	4	(5)	2	1	3	3
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1	5	3	3	2	4	3	2	1	2